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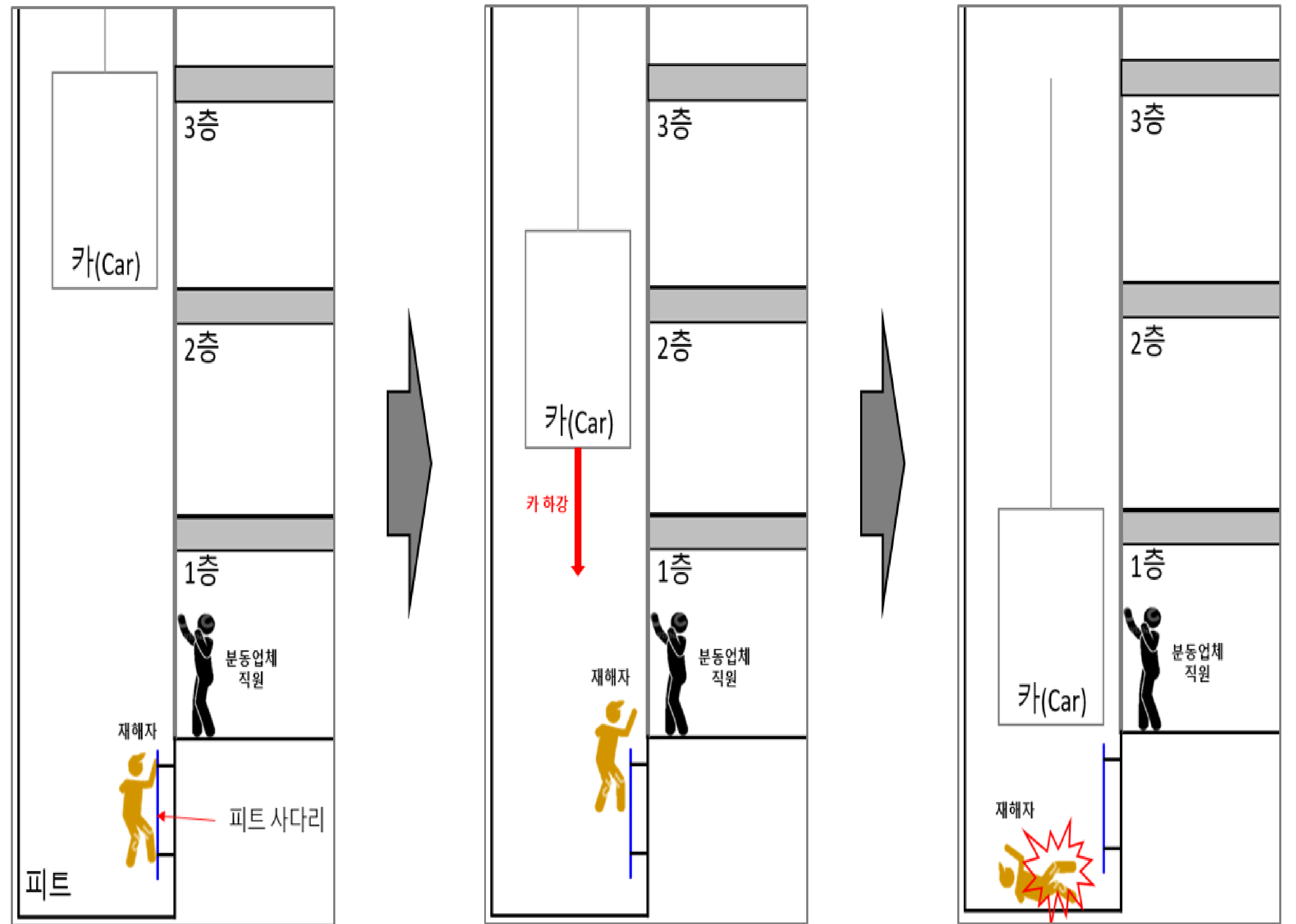


# 승강기 검사 중 떨어짐



## 재해개요

2021. 08. 00.(목) 11:30 경기 용인시 소재  
 OO아파트에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 
 OOO 소속 재해자가 승강기 정밀검사 중  
 피트하부에 설치된 과부하감지장치  
 조정 작업 완료 후 사다리를 이용 1층으로  
 올라 오던 중 3층에 정차하고 있던  
 승강기가 하강하였고, 이를 피하기 위해  
 피트로 떨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 
 치료 중 폐색전증 으로 사망한 재해임



## 발생원인

### ▶ 현장 안전조치 미흡

- (승강기 조정 작업 중 운전정지 미실시) 승강기 피트에서 과부하감지장치 조정작업이 완료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피트에서 빠져 나올 때 까지 승강기 운전을 정지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

### ▶ 안전관리 미흡

- (작업절차에 따른 작업자 배치 및 절차 미이행) 작업절차서 상 승강기 검사·유지·보수 작업은 전문 작업자가 참여하여 이를 진행해야 하나, 하중 테스트를 위한 분동 공급업체 작업자가 승강장 문 개방을 요구하여 작업자가 피트에서 빠져 나오기 전에 승강기가 작동

## 예방대책

### 1 승강기 수리·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

- 승강기 수리·교체·점검·조정 등의 작업 시 승강기의 불시 작동으로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작업절차서 상의 운전정지 조치를 준수
- 운전을 정지하는 경우 기계실에 설치된 기동 잠금장치를 작동하고 별도로 키를 관리해야 함

### 2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별 표준안전 작업방법 수립

- 승강기 유지·보수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과 2인1조 작업을 실시
- 피트 진·출입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해 운전정지 잠금장치, 승강장 문 고정장치 및 승강기정지장치(피트스위치)를 작동 불시에 승강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치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